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성일종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263

발의연월일: 2020. 11. 12.

발 의 자:성일종·구자근·김태흠

이명수・윤두현・전주혜

윤재옥 · 강민국 · 하태경

김정재 • 이 영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재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 공자는 생활조정수당을 받고 있지만, 참전유공자는 생활조정수당 없이 참전명예수당만 받고 있음.

그러나 참전명예수당은 월 32만원에 불과하여 참전유공자 어르신이 지급받는 참전명예수당으로는 최소한의 삶만 유지할 수 있는 수준임.

이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절반이 넘는 참전유공자가 생활조정수당을 받지 못하고 가난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임.

따라서 국가가 어려울 때 온 몸을 바쳐 싸웠던 참전유공자 어르신들의 사기를 높이고 영예로운 삶이 유지되도록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1인 가구 최저생계비 범위 내에서 생활조정수당을 신설하고, 의료비 지원에 약제비를 추가함으로써 국가적 책임을 다할 수

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6조의3 및 제7조).

법률 제 호
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3(생활조정수당) ① 국가보훈처장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게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- ② 생활조정수당은 월액으로 하며, 그 지급액, 지급방법 및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1인 가구 최저생계비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을 받으려는 참전유공자는 국가보훈 처장에게 생활조정수당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국가보훈 처장은 제4항에 따라 참전유공자와 그의 부양의무자(부양의무가 있 는 배우자, 부모,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 다)의 생활수준을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지급 여부 를 결정하여야 한다.
- ④ 참전유공자와 그의 부양의무자의 생활수준 조사를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8조의3부터 제8조의5까지를 준용한다.
- ⑤ 제3항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지급의 신청방법·절차 등에 관하여

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"진료비용"을 각각 "진료비용 및 약제비용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진료비"를 "진료비용·약제비용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현 행 <신 설>	개 정 안 제6조의3(생활조정수당) ① 국가 보훈처장은 65세 이상의 참전 유공자에게 생활조정수당을 지 급할 수 있다. ② 생활조정수당은 월액으로 하며, 그 지급액, 지급방법 및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 른 1인 가구 최저생계비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③ 제1항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을 받으려는 참전유공자는 국 가보훈처장에게 생활조정수당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. 이 경 우 국가보훈처장은 제4항에 따 라 참전유공자와 그의 부양의 무자(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, 부모,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
	무자(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,

제7조(의료지원) ① 참전유공자가 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 치·운영하는 의료기관(「한국보 훈복지의료공단법」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을 포함한다)에 서 진료를 받는 경우 그 진료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(減免)하며,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부담한다.

② 국가는 65세 이상인 참전유 공자의 진료를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설치·운영하는 의 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 위탁 하여 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

무자의 생활수준 조사를 위한
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8조의3
부터 제8조의5까지를 준용한다.
⑤ 제3항에 따른 생활조정수당
지급의 신청방법·절차 등에 관
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
으로 정한다.
제7조(의료지원) ①
진료
<u>비용 및 약제비용</u>
<u>.</u>
②
<u>진</u>
료비용 및 약제비용